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제18729호, 2022. 1. 11. 공포, 7. 12. 시행) 됨에 따라, 시행령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, 한국과학기술한림원, 한국공학한림원,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도록 개정 중이므로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재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과학기술 관련단체 규정(안 제5조)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

1.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
2.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3.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관련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과학기술 관련 단체)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관련 단체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이다.

1.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
2.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3.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관련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(과학기술 관련 단체) 영</u> <u>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학</u> <u>기술관련단체는 「민법」 제3</u> <u>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</u> <u>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계</u> <u>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</u> <u>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</u> <u>인 또는 단체이다.</u> 1. <u>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</u> 2. <u>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</u> 3. <u>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</u> <u>터 관련 단체 중 과학기술</u> <u>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</u> <u>는 단체</u>